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. 12. 20 선고 2023가단2080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주

담당변호사 성기배, 김종열

변 론 종 결 2023. 12. 6.

판 결 선 고 2023. 12. 20.

## 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15 지분에 관하여,  
가. 피고들과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2019. 10. 14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,  
나. 피고들은 D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. 3. 26. 접수 제129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D은 2019. 3. 8. E저축은행으로부터 31,000,000원을 대출받았고, 원고는 E저축은행의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위 대출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한 양수금 청구 소송(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100947)을 제기하여 'D은 원고에게 31,810,548원 및 그 중 28,975,425원에 대하여 2020. 8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.

나. F은 2019. 10. 17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G, 자녀 피고들 및 H, I, D, J이 존재하는데, 위 상속인들은 2019. 10. 17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피고들이 각 1/2 지분씩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(이하 '이 사건 처분행위'라 한다)을 하였으며,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. 3. 26. 접수 제129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D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2/15 및 K은행에 대한 예금 596,470원이 존재하였고, 소극재산으로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제2호증, 제5호증, 제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판단

가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(1)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(대법원

2013. 4. 26.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),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들에게 이전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,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확인되는 D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, D의 사해의사도 추정되고,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.

(2) 피고들은,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D의 처 명의의 160,000,000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였고, D이 2020. 1. 9. 협의이혼을 함에 따라 그 1/2은 재산분할이 되었으며, 원고의 피보전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므로, D이 채무초과이거나 이 사건 처분행위로 채무초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D의 이혼시기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하는데 피고들 주장의 사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, D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또한 피고들은 F 사망시까지 D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 D의 경제적 상황을 알지 못 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데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),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D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여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#### 나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/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 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안민영

## 별 지 목 록

## 1동의 건물의 표시

충청북도 충주시

동

[도로명주소]

충청북도 충주시

##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1층 호

피씨조

59.71㎡

##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

1. 충청북도 충주시 대 46125.2㎡

대지권의 종류 :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46125.20분의 33.00

